

**【농업생명과학대학】**

**식품공학과 · 연합동과정 내규 전문**

개정 2006. 0. 0.	개정 2007. 0. 0.	개정 2008. 0. 0.	개정 2009. 0. 0.	개정 2010. 0. 0.
개정 2011. 0. 0.	개정 2012. 0. 0.	개정 2013. 0. 0.	개정 2019. 1. 17.	

규정 항목	내 용
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(\$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입학 후 즉시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식품공학과 학연 협동과정의 참여 연구소의 연구원 1인, 대학원 교수 1인을 공동 지도교수로 위촉한다. 다만,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지도교수 추천 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.</li> <li>•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</li> </ul>
② <삭제>	
③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(\$16-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.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.</li> </ul>
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 (\$17-④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석.박사과정 모두 1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</li> </ul>
⑤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 여부(유효기간 및 학점인정 범위) (\$24-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(연구과정 포함)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,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재학 최종학기말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한 자라야 한다</li> </ul>
⑥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.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(\$29-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수는 석.박사 모두 1과목으로 한다.</li> </ul>
⑦ 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(\$32-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석.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는(석사 15학점이상, 박사 18학점이상 이수자)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학연 협동과정 업무 담당부서 및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</li> </ul>
⑧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(\$3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학위논문 심사위원은 공동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대학원 교수와 식품공학과 학연 협동과정의 참여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(지도교수 포함)를 구성 운영한다.</li> </ul>
⑨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(학칙제68조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석사,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입학전형평가위원회(해당 학생의 입학전형 당시 면접평가위원회)가 정한다. 석.박사과정 모두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15학점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.</li> </ul>
⑩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 (\$17-⑧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9학점, 박사 12학점 이내</li> </ul>
⑪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석사 졸업예정 학생은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학위논문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.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예정 학생은 학위논문 내용의 일부를 전국규모 관련 학회(학진등재)에 제1저자로 1편 이상 투고하여 채택되어야 한다. 단, 취업학생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</li> <li>•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분야는 ①식품공학, 식품가공학 ②식품화학, 영양화학 ③식품미생물학, 식품생물공학 총3분야로 한다, 이 중 석사과정은 2분야, 박사과정은 3분야로 하고 이 분야의 순서는 관계없으며, 시험은 각 분야 당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.</li> <li>•종합시험면제에 관한 사항: 우리학과는 종합시험 면제기준의 2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, 면제 신청자격은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3.75(4.5만점 기준)이상인 학생이다. 면제 기준은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SCI(SCIE)급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Accept(게재승인)된 석,박사 과정생으로 석사과정은 1편, 박사과정(석박사통합과정 포함)은 2편으로 한다.</li> <li>•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은 토익 750점을 기준으로 한다.</li> </ul>
⑫ 부칙조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.</li> <li>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는 시행일 당시 재적생(재학, 휴학 및 수료 포함)에게 모두 소급 적용한다.</li> </ul>